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74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조정훈 · 박충권 · 서천호
김용태 · 김대식 · 강명구
인요한 · 김미애 · 정성국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를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제외한 사회복지”로,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 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 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 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 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② ----- ----- ----- ----- ----- ----- ----- ----- ----- ----- --.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 다. (생략)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 한다)에 시설비·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 출하는 기부금 1) ~ 10) (생략)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대안교육기관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 육기관
마.·바. (생략)	마.·바. (현행과 같음)

2. (생략)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u>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u>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생략) ④ ~ ⑥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제외한 <u>사회복지</u>----- ----- ----- 「<u>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대안교육기관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u>-----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